

2022학년도 1학기 수업형태 안내

1. 2022학년도 1학기 수업형태 기준

가. 2022학년도 1학기 수업형태 기준

수업형태	시험형태
대면수업 일부강좌 원격수업 시행	대면시험 원칙

나. 대면수업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

구 분	적용사항
좌석 있는 강의실	칸막이 설치(좌석 띄우기 없음) 또는 좌석 한 칸 띄우기
좌석 없는 강의실 (체육관, 무용실 등)	강의실 면적 4m² 당 1명
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수업 (노래 부르기, 관악기 연주 등)	강의실 면적 4㎡ 당 1명 또는 개별 연습실 사용
칸막이 설치가 어려운 수업 (실험·실습 등)	강의실 면적 4m² 당 1명

2. 원격수업 시행 대상강좌 안내

가. 원격수업(실시간화상강의) 시행 대상강좌

순 번	내 용	비고	
1	대형강의 * 2021-2학기(또는 최근 개설학기) 실제 수강인원 <u>80명 이상</u> 만 해당		. 교강사 자율 . 별도 허용.승인
2	휴강에 대한 보강수업	. 실시강화상강의 허용	신청 없이 교강 사 판단에 따라 원격수업 시행
3	초청강연	. 초청강연자가 교내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실시간화상강의 시행	가능
4	원격수업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	. 승인 신청 필요 . 원격수업은 실시간화상강의 시행 원칙(녹화장	강의 신청 안됨)



나. 원격수업(실시간화상강의) 신청 절차

	교강사가 원격수업 승인 신청서(붙임2 서식 이용) 작성하여 수업관장대학
1	RC/부서로 제출
	* 원격수업을 시행해야만 하는 사유를 승인신청서에 최대한 상세히 서술

수업관장대학RC/부서 행정팀에서 학사팀으로 **공문 제출** (붙임2 HWP파일, 붙임3 엑셀파일 모두 첨부) 2022.01.18(화)까지

 학사팀에서 교무처장 심의 진행 후 승인 결과를 수업관장대학RC/부
 2022.01.20(목)

4 승인된 교과목에 한해 수업계획서 및 시간표에 입력

다. 원격수업 실시 강좌 시스템에 변경사항 반영

■ 교과목 담당 교강사 : 강의계획서의 주별 강의계획에 수업형태 입력

■ 수업관장대학RC/부서 행정팀: 교내정보>수업기본정보입력에서 수업형태 입력